

제253회 영등포구의회 2024년도 제1차 정례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유승용 의원 대표발의】



2024. 6. 20.

사 회 건 설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경 과

의안 제364호로 2024년 5월 31일 유승용 의원 외 3명으로
부터 발의되어 2024년 6월 1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

2. 제안이유

관내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가 보다 즐겁고 유익한 공간
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공원 내에서의 음주 및 흡연행위에 대한
예방 등을 포함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에 따라 어린이공원에서의 금지행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인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관리·지원계획 수립(안 제4조)

나. 안전 및 위생 점검기준(안 제5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해당 없음

다. 입법예고(2024. 5. 16. ~ 5. 20.) 결과: 의견 없음

5. 검토의견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 관내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가 보다 즐겁고 유익한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공원 내에서의 음주 및 흡연행위에 대한 예방 등을 포함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에 따라 어린이공원에서의 금지행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인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바지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 검토결과

-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주된 내용은 기존 제5조(행위의 제한) 조항을 삭제하고, 해당 사항을 제4조(관리·지원계획 수립)에 포함하도록 개정한 것임.
- 「지방자치법」 제28조제1항 단서조항에서는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음.
- 기존 제5조(행위의 제한)에 따른 제한은 구민의 “권리 제한 및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으로, 해당 사항이 법률의

위임이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음.

- 우선 어린이공원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른 “도시공원”의 한 종류이며, 법 제49조에서는 “도시공원 등에서의 금지 행위”를 규정하고 있음.
- 해당 규정에서는 단순히 “금지행위”에 관한 내용과 함께 같은 조 제3항에서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구청장도 포함될 것으로 해석되며, 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안내표지 설치”에 관해서만 의무를 부과하였고,
- 법 제56조(과태료)에서는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에 관한 부과·징수”에 관해서만 구청장에게 위임하였으나, 상위 법령에서는 구청장에게 위반한 자에 대해 “퇴장을 명하는 등”의 “주민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는” 사항은 위임하지 않았음.
- 침익적인 조항을 규정할 때에는 수익적인 조항을 규정할 때보다 신중을 기해야 하며, 더욱이 기존 조례 제5조제8호는 상위 법령에 따른 “금지행위” 범위를 벗어남.
- 또한 법에서 규정된 내용의 조항을 일일이 나열하는 것은 상위 법령이 개정될 때마다 조례를 개정해야하는 등의 문제로 입법경제상 바람직하지 않음.
- 위와 같은 문제로 법령의 위임이 없는 “행위의 제한” 조항을 삭제하였으나, 어린이공원 등이 어린이들에게 즐겁고 유익한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금지행위” 사항에 관하여는

상위법령 조항을 인용하여 안 제4조(관리·지원계획 수립)에 포함하도록 개정함.

- 이에 따라 시행령 제50조제1호에 근거하여 “야영행위, 취사행위 및 불을 피우는 행위” 등도 금지행위에 포함 되었으며,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는 금지사항이 아니나, 「국민건강증진법」 등에 의거 “음주·흡연행위 예방”에 관한 사항도 추가로 규정함.
- 따라서 검토사항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조례 개정의 취지가 타당하며 입법 체계나 자구에도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참고 자료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도시공원의 세분 및 규모) ① 도시공원은 그 기능 및 주제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세분한다. <개정 2012. 12. 18., 2013. 5. 22., 2016. 3. 22., 2020. 2. 4., 2021. 1. 12.>

1. 국가도시공원: 제19조에 따라 설치·관리하는 도시공원 중 국가가 지정하는 공원

2. 생활권공원: 도시생활권의 기반이 되는 공원의 성격으로 설치·관리하는 공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공원

가. 소공원: 소규모 토지를 이용하여 도시민의 휴식 및 정서 함양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공원

나. 어린이공원: 어린이의 보건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공원

다. 근린공원: 근린거주자 또는 근린생활권으로 구성된 지역생활권 거주자의 보건·휴양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공원

3.(생 략)

②(생 략) [전문개정 2011. 9. 16.]

제49조(도시공원 등에서의 금지행위) ① 누구든지 도시공원 또는 녹지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 5. 22., 2021. 4. 13.>

1. 공원시설을 훼손하는 행위

2. 나무를 훼손하거나 이물질을 주입하여 나무를 말라죽게 하는 행위

3. 심한 소음 또는 악취가 나게 하는 등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주는 행위

4. 동반한 반려동물의 배설물(소변의 경우에는 의자 위의 것만 해당한다)을 수거하지 아니하고 방치하는 행위

5. 도시농업을 위한 시설을 농산물의 가공·유통·판매 등 도시농업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행위

6. 그 밖에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관리에 현저한 장애가 되는 행위로서 대통령

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② 누구든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하는 도시공원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1. 4. 13.>

1. 행상 또는 노점에 의한 상행위

2. 동반한 반려견을 통제할 수 있는 줄을 착용시키지 아니하고 도시공원에 입장하는 행위

③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제2항에 따라 금지행위가 적용되는 도시공원 입구에 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56조(과태료) ① 제40조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금액을 초과하여 입장료를 징수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49조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금지행위를 한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3. 5. 22.>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가 부과·징수한다.

2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도시공원 등에서의 금지행위) 법 제49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0. 6. 29., 2012. 3. 13., 2014. 10. 22., 2015. 8. 11., 2018. 12. 11., 2024. 4. 9.>

1.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야영행위, 취사행위 및 불을 피우는 행위

2. 오물 또는 폐기물을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 버리는 행위

3.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4. 이륜 이상의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행하는 영업행위. 다만,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화물자동차로서 이동용 음식판매 용도인 소형·경형화물자동차 또는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특수자동차로

서 이동용 음식판매 용도인 특수작업형 특수자동차를 사용하여 법 제20조 제1항에 따라 공원관리청으로부터 관리를 위탁받은 공원시설에서 행하는 영업행위(「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는 제외한다.

5. 동력장치를 이용해서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가. 장애인 또는 노약자가 동력장치를 이용해서 출입하는 행위

나. 중량(동력장치를 장착한 용구 전체의 중량을 말한다)은 30킬로그램 미만이고 최고속도는 시속 25킬로미터 미만인 동력장치로서 공원관리청이 종류 및 안전기준 등을 정해서 허용하는 동력장치를 이용해서 공원관리청이 정한 통행구간으로 출입하는 행위

5의2.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제2조제4호의2의 실외이동로봇을 운영하는 자가 실외이동로봇을 차도 외의 장소에서 운행하는 행위. 다만,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실외이동로봇을 차도 외의 장소에서 운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제40조의2제1항에 따른 운행안전 인증을 받은 실외이동로봇일 것

나. 실외이동로봇의 질량(적재물의 질량을 포함한다)이 100킬로그램 이하일 것

다. 실외이동로봇의 운행속도가 시속 5킬로미터 이하일 것

라. 공원관리청이 정한 운행시간 및 운행구간을 준수할 것

6. 전·답 외의 지역에서 무단으로 경작하는 행위

7. 식물의 꽃과 열매를 무단으로 채취하는 행위

8. 공원 내에 서식하는 동물을 학대하거나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포획하는 행위

3

지방자치법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② (생략)

제8조의4(금주구역 지정) ① 지방자치단체는 음주폐해 예방과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례로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 는 관할구역 안의 일정한 장소를 금주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주구역에서는 음주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 된 금주구역을 알리는 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주구역 안내 표지의 설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9조(금연을 위한 조치) ①~③(생 략)

④ 다음 각 호의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여 야 한다. 이 경우 흡연자를 위한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으며, 금연구역을 알 리는 표지와 흡연실을 설치하는 기준·방법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1~11.(생 략)

12.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13~26. (생 략)

⑤ ~ ⑨ (생 략)

제253회 영등포구의회 2024년도 제1차 정례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유아 숲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유승용 의원 대표발의】



2024. 6. 20.

사 회 건 설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유아 숲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경 과

의안 제365호로 2024년 5월 31일 유승용 의원 외 3명으로
부터 발의되어 2024년 6월 1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

2. 제안이유

유아 숲 교육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유아 숲 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체계적이고 내실
있는 추진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유아숲체험원 조성·운영 등(안 제5조)

나. 사업추진 등(안 제6조)

다. 협력체계 구축(안 제7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유아교육법」,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해당 없음

다. 입법예고(2024. 5. 13. ~ 5. 17.) 결과: 의견 없음

5.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 유아 숲 교육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유아 숲 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체계적이고 내실 있는 추진 기반을 마련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 주요 내용으로

- **안 제4조(운영계획의 수립·시행)**에서는 유아 숲 교육을 활성화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기본목표 및 추진 방향, 프로그램 운영방안, 실태조사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운영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 **안 제5조(유아숲체험원 조성·운영)**에서는 유아숲체험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현재 우리 구에서 시행 중인 유아숲 체험원에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더불어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유아숲체험원의 관리·운영을 위하여 유아숲체험원을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 **안 제6조(사업추진 등)**에서는 시설 조성 및 운영, 전문 인력 양성,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등 유아 숲 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해당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등에게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검토결과

- 우리 구는 서울시 자치구 중 유일하게 산이 없으며, 서울시 전체 준공업지역의 25%를 차지하는 등 녹지가 부족한 실정

으로, 유아들이 자연을 접하고 자연에서 활동하는 시간 또한 불충분함. 이에 따른 문제점으로는 유아들의 신체활동 감소, 스트레스 증가, 환경보호에 대한 관심도 저하 등이 있음.

-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산림교육이 있으며, 해당 교육을 통해 유아들이 좁은 교실 밖으로 나와 다채로운 생명이 살아 숨 쉬는 산림 속에서 다양한 체험·탐방·학습을 통하여 신체건강 증진, 정서적 안정 등을 도모할 수 있으며, 유아기부터 산림의 중요성을 직접 경험함으로써 환경보호에 대한 관심 및 이해도를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 이에 따라 우리 구는 관련 조례는 없지만 2017년 3월부터 현재까지 「영등포공원 유아숲체험원」을 운영하고 있음.

영등포공원 유아숲체험원 운영				
운영비	추진실적 및 추진계획(회)			2024년 운영실적
	2022	2023	2024	
28,784천원(시비)	345	369	350	2024.3월: 20회 2024.4월: 49회

운영반	대상	내용	공통
기본숲반 (상시)	장미어린이도서관, 유치원 등 공개모집	- 유아숲지도사 1명 상시 배치	* 주 2시간 이상 수업 이행
자율숲반 (수시)		- 인솔교사 1명 이상 동행 시 - 유아숲지도사가 있는 기관 또는 숲체험 경험이 있는 기관 우선 배정	
<신규> 어울림반 (상시)		- 유아숲지도사 1명 상시 배치 (장애 관련 교육 이수) - 장애 아동은 보호자 1인 이상 동반 - 일반 아동은 소외계층, 취약계층 등을 비롯하여 유아 누구나	

- 이에 본 조례안은 유아 숲 교육 관련 시설 조성, 전문 인력 양성, 프로그램 개발 등 유아 숲 교육의 전문성 향상 및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조례 제정의 취지가 타당하며 입법 체계나 자구에도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참고 자료

1

유아교육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 3. 24., 2012. 3. 21.>

1. “유아”란 만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전까지의 어린이를 말한다.
2. “유치원”이란 유아의 교육을 위하여 이 법에 따라 설립·운영되는 학교를 말한다.
3. “보호자”란 친권자·후견인 그 밖의 자로서 유아를 사실상 보호하는 자를 말한다.
4. 삭제 <2012. 3. 21.>
5. 삭제 <2012. 3. 21.>
6. “방과후 과정”이란 제13조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 이후에 이루어지는 그 밖의 교육활동과 돌봄활동을 말한다.

2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2. 21.>

1. “산림교육”이란 산림의 다양한 기능을 체계적으로 체험·탐방·학습함으로써 산림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산림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며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도록 하는 교육을 말한다.
2. “산림교육전문가”란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에서 산림교육 전문과정을 이수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 가. 숲해설가: 국민이 산림문화·휴양(「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산림문화·휴양을 말한다)에 관한 활동을 통하여 산림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고 올바른 가치관을 가질 수 있도록 해설하거나 지도·교육하는 사람
 - 나. 유아숲지도사: 유아(「유아교육법」 제2조제1호의 유아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산림교육을 통하여 정서를 함양하고 전인적(全人的)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지도·교육하는 사람
 - 다. 숲길등산지도사: 국민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등산 또는 트레킹(길을 걸으면서 지역의 역사·문화를 체험하고 경관을 즐기며 건강을 증진하는 활동을 말한다)을 할 수 있도록 해설하거나 지도·교육하는 사람

3.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이란 산림교육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하여 제7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산림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산림교육이 체계적으로 실시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유아숲체험원의 등록 등) ① 유아가 산림의 다양한 기능을 체험함으로써 정서를 함양하고 전인적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지도·교육하는 시설(이하 “유아숲체험원”이라 한다)을 조성·운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시설과 인력을 갖추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유아숲체험원을 조성하려는 자는 유아숲체험원의 명칭·소재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성하는 유아숲체험원: 산림청장

2. 법인 또는 개인이 조성하는 유아숲체험원: 시·도지사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국가행정기관의 장(산림청장은 제외한다)이 유아숲체험원을 조성하는 경우에는 산림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8. 2. 21.>

④ 시·도지사는 지역의 특수성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유아숲체험원의 시설과 인력 기준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신설 2018. 2. 21.>

⑤ 제2항에 따른 등록을 한 자가 그 등록사항을 변경한 때에는 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8. 2. 21.>

⑥ 시·도지사는 제2항제2호에 따른 등록 또는 제3항에 따른 변경등록이 있는 때에는 그 내용을 산림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 2. 21.>

⑦ 유아숲체험원의 등록 및 변경등록의 기준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 2. 21.>

3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유아숲체험원의 등록기준 및 등록사항)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유아숲체험원(이하 “유아숲체험원”이라 한다)의 등록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법 제1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유아숲체험원의 대표자 또는 법인명

2. 유아숲체험원의 토지 명세 및 시설현황

3. 유아숲지도사 채용현황

③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특별자치시장(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은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을 60 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완화하여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18. 8. 14., 2023. 11. 16.>

1. 별표 3 제2호가목에 따른 유아숲체험원의 규모 기준

2. 별표 3 제4호가목2) 및 3)에 따른 유아숲지도사 인원 기준

유아숲체험원의 등록기준(제13조제1항 관련)

1. 유아숲체험원의 입지조건

가. 유아숲체험원은 숲의 식생(植生)이 다양하여야 하고, 숲의 건전성을 유지하고 있어야 한다.

나. 유아숲체험원은 위험시설(「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의2제1항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로부터 수평거리 50m 이상 떨어진 곳에 위치하여야 한다.

다. 차량의 접근이 가능한 지역에서부터 1km 이내에 위치하여야 한다.

2. 유아숲체험원의 규모 및 시설

가. 유아숲체험원의 규모는 1만㎡ 이상이어야 한다.

나. 유아숲체험원은 다음의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1) 야외체험학습장: 숲체험, 생태놀이, 관찰학습 등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 그 규모는 유아숲체험원 전체 규모의 30% 이상이어야 한다.

2) 대피시설: 비, 바람 등을 피할 수 있는 시설로서 목재구조 간이시설이나 임시 시설이어야 한다.

3) 안전시설: 위험지역에는 목재로 된 안전펜스 등의 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 유아숲체험원에 화장실이나 의자, 탁자 등 휴게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1) 입지의 특성에 맞게 이용하기 편리한 구조로 되어 있을 것

2) 자연친화적인 간이시설 또는 임시시설일 것

3. 유아숲체험원 운영 프로그램 및 교구 등

가. 계절에 따라 운영할 수 있는 체험프로그램이 있어야 한다.

나.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다양한 교구가 적정하게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

다. 응급조치를 위한 비상약품 및 간이 의료기구와 소화기 등 비상재해 대비 기구 등을 갖추어야 한다.

4. 유아숲체험원의 운영인력

가. 유아숲체험원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다음의 구분에 따른 인원의 유아숲지도사를 상시 배치하여야 한다.

1) 유아의 상시 참여인원이 25명 이하인 경우: 유아숲지도사 1명

2) 유아의 상시 참여인원이 26명 이상 50명 이하인 경우: 유아숲지도사 2명

3) 유아의 상시 참여인원이 51명 이상인 경우: 유아숲지도사 3명

나. 유아의 안전을 위한 유아숲지도사 외에 보조교사가 선정·배치되어 있어야 한다.

5. 그 밖의 사항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유아숲체험원 운영 기준 및 방법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4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6(생략)

7. “산림복지전문업”이란 숲해설, 산림치유 등 산림복지서비스 제공을 영업의 수단으로 하는 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8~10.(생략)

5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산림복지전문업) 법 제2조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8. 8. 21., 2023. 6. 20.>

1. 산림치유업: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림치유(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산림치유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지도하거나 같은 법 제11조의2제3항에 따른 산림치유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는 사업
2. 숲해설업: 국민이 산림문화·휴양(「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산림문화·휴양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활동을 통하여 산림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고 올바른 가치관을 가질 수 있도록 해설을 제공하거나 지도·교육하는 사업
3. 유아숲교육업: 유아(「유아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유아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산림교육(「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산림교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통하여 정서를 함양하고 전인적(全人的)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도·교육하는 사업
4. 숲길등산지도업: 국민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등산 또는 트레킹(길을 걸으면서 지역의 역사·문화를 체험하고 경관을 즐기며 건강을 증진하는 활동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할 수 있도록 해설을 제공하거나 지도·교육하는 사업
5. 종합산림복지업: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모두 포함하여 산림복지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사업
 - 가. 제1호에 따른 산림치유업
 - 나.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 중 하나 이상의 사업